

【별첨 6】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

1. 목적

- 가.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성 및 접근성 제고
- 나. 대기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

2. 적용범위
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사업지구
- 나. 신도시 건설 및 신시가지 개발지역
- 다. 상업·업무지역 등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- 라. 그 밖에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

3. 계획의 기본방향

- 가. 공공시설, 보행집결지, 오픈스페이스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
- 나.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
- 다. 노선별, 구간별 특성화

4. 공간조성 기준

가. 일반원칙

- (1) 보행자전용도로는 주변여건에 적합한 유형으로 특화하여 도심형, 주거형, 녹도형으로 구분한다.
- (2) 필요시 보행자전용도로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.
- (3) 보행자전용도로의 내부구조, 폭원, 구배 등은 보행에 의존하는 공간이므로 인간척도를 고려하고, 양호한 시계의 확보, 적정 보행밀도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기능적이고 안전한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.
- (4) 보행자전용도로 노선 주변의 개발상태 및 잠재력(위치, 주변 토지이용, 보행목적, 밀도 등)에 따라 이용형태, 공간의 형태(폭과 선형)등을 고려하여 구간별, 노선별로 특성있는 보행공간이 되도록 한다.
- (5) 보행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되,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하여 있는 소규모 광장, 공연장, 휴식공간, 건축물의 전면간격 등 주변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공간이 되도록 한다.
- (6) 보행자전용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, 보행동선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(7) 일반도로의 평면교차하는 횡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행밀도 및 속도에 따라 적절한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(8) 보행자전용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결절점주변에는 소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장애인,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에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10) 공중변소, 공중전화, 우체통, 벤치, 차양시설 등 보행자 편의시설과 녹지 등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보행자전용도로의 교차점이나 보행결집지, 그 밖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11)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 또는 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12) 긴급 차량이나 기반시설의 검사, 유지, 보수 등을 위한 사람이 용이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식재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폭원(4m이상)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나.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

- (1) 유형
 - (가) 중심지구의 보행자전용도로
 - (나) 상업·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일정구간에 대하여 몰(mall)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보행인을 수용하고 활발한 상행위를 유도하는 보행자전용도로
- (2) 폭원 : 주변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 있지만 최소한 6m이상(쇼핑몰은 10~20m)
- (3) 선형 :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으로 구성(쇼핑몰과 같이 활발한 상행위가 유도되는 공간은 직선과 곡선을 조화롭게 겸용하여 구성)
- (4) 공간구성 : 통근·통학·구매 등의 목적통행 위주의 동적 공간과 집회·만남·휴식 등을 위한 광장적 성격의 공간으로 구성
- (5) 조성기준
 - (가) 유희활동이 많은 공간이므로 내부광장, 가로시설물 등을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.
 - (나) 전철역, 버스정류장 등 보행집결지와 연결하여 있을 때에는 소규모 광장 등을 두어 보행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.
 - (다) 보행자데크(deck)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아래층의 천장고를 최소한 4.5m를 확보하고 지상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체계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에스컬레이터(escalator)등의 수직동선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.

다. 주거형 보행자전용도로

- (1) 유형
 - (가) 간선보행자전용도로(중심지구의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거지로 연결되는 동선)
 - (나) 지선보행자전용도로(간선보행자전용도로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동선)
- (2) 폭원
 - (가) 간선보행자전용도로 : 6m 이상(주변지형여건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)
 - (나) 지선보행자전용도로 : 3~4m(주변지형여건 등에 따라 1.5m이상도 가능)
- (3) 선형 :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적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공간적 변화의 창출을 위하여 지형조건에 따라 곡선형 등으로 설치 가능
- (4) 공간구성 : 통근·통학·구매 등의 주요한 목적동선을 수용하는 공간과 산책 등 회유동선의 성격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구성
- (5) 조성기준

- (가) 근린주구중심내 시민회관, 어린이공원 등이 접하는 입구부분에 소광장을 설치하여 휴식·정보전달, 유아들의 놀이활동, 소집회 등 개개인의 일상적 활동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목이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랜드마크(landmark)적 성격을 갖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나) 보행자전용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소광장 등을 설치하여 보행의 상충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간의 대화·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.
- (다)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하고 특히 보행로에 주·정차를 못하도록 진입부에 단주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진입을 차단하도록 한다.

라.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

- (1) 폭원 : 폭원은 가급적 3m 이상으로 하되,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전체 폭원을 6m 이상으로 하고 개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넓게 한다.
- (2) 선형 : 선형은 부정형의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하고 폭원의 넓고 좁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.
- (3) 공간구성 : 녹지대, 자연녹지, 고수부지, 제방, 공원 등의 주변 오픈 스페이스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체화되도록 공간을 구성한다.
- (4) 조성기준
 - (가) 넓은 폭원의 녹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곡선형의 중앙분리대나 식수대 등을 이용하여 변화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.
 - (나) 부정형의 보행로로 인하여 생기는 소공간에는 벤치, **피걸러** 등이 설치된 휴게공간이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등 다양한 활동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.
 - (다) 지형상의 특성에 따라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를 병행 설치하도록 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
5. 시설기준

가. 포장

(1) 일반원칙

(가) 지역, 장소의 성격에 적합한 포장

- ① 지역에 따라 혹은 유적지, 해안가 등 공간성격과 목적동선, 회유동선 등 동선의 성격에 따라 포장 재료, 색채, 패턴 등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② 전 구역을 포장할 경우에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포장마감을 조합하여 재료나 색채에 변화를 갖도록 한다.
- ③ 특별한 지역, 통로, 중요한 결절점, 교차로 부근,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는 포장패턴의 변화, 포장재료, 색상, 도시의 로고나 특별한 문양의 새김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장소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(나) 보행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포장

- ① 보행시 돌출부에 걸리거나 패어진 흙에 의하여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.
- ② 배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쾌적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③ 차도 등과의 교차지점에서는 보행자전용도로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패턴

과 유사하게 바닥포장을 하고 차량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펌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.

(2) 재료의 선정기준

- (가) 시공이 용이하고 견고할 것
- (나)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보수가 용이할 것
- (다) 질감이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일 것
- (라) 가능하면 현장의 특수한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향토적인 재료일 것
- (마) 포장색채, 평면형태, 평면 또는 경사면에서의 적합성, 내열성, 투수성 등을 고려할 것

나. 식재

(1) 일반원칙

(가) 식재기법

- ① 기념물, 조각물 및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식재하고 노출된 혐오시설 등은 생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차폐식재를 하도록 한다.
- ② 구획도로에 면한 부분, 시선 유도지점, 차폐시설, 법면 등 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식재기법을 활용한다.
- ③ 다른 보행자전용도로나 일반차도 등과의 교차지점에서의 식재는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.

(나) 수종선정

- ① 보행자 전용도로내의 장소별 특성에 부합되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한다.
- ② 화목의 개화기, 향기, 신록, 열매, 색깔 등의 미적요소를 고려한 수종을 혼합배식하여 계절적인 감각을 줄 수 있도록 한다.
- ③ 이식의 용이성, 기온, 토성, 수분, 병충해, 공해 등의 환경에 대한 적응성(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대기오염에 대한 적응성),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(2)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

- (가) 수관폭이 넓은 낙엽활엽수를 주종으로 2열 병렬식재를 하여 연속성 및 쾌적성을 제고토록 한다.
- (나) 광장 등에는 고립식재, 휴게공간 등에는 경관·녹음식재를 하고, 진입부 또는 교차로 부분에는 특징적인 수종을 선정하여 요점식재를 하는 등 장소에 따라 적절한 수종선택 및 식재기법을 활용하여 식재한다.
- (다) 공간의 성격이 변화되는 경계부의 적정 위치에 밝고 화려한 화초류 위주의 식재대를 설치하여 식재한다.

(3) 주거형 보행자전용도로

- (가) 주로 화목홍엽류의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주변에는 저화목, 잔디 등을 식재하여 친밀감 및 계절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.
- (나) 공원과 만나는 입구부 식재는 녹음기능을 중시하여 공원과 보행공간이 일체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고층아파트 주변의 보행공간의 식재는 아파트에 의하여 그들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여 밝은 색채의 화목류와 관상기능의 수종을 식재한다.7

(4) 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

- (가) 수종은 관상가치가 큰 관목류를 주로하여 식재하고 화목류, 상록수, 활엽수 등을 선정하여 적정 배치·식재한다.
- (나) 자연녹지, 근린공원 등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연결되는 부분에는 녹음식재, 경관식재, 조화식재 등으로 식재한다.

- (다) 교목과 관목에 의한 식재대를 설치하고 주택지와 먼한 곳의 경우에는 상록교목이나 관목으로 차폐 식재를 하며 소광장 및 방향전환지점, 결절점에는 고립식재를 한다.

다. 가로시설물

(1) 일반원칙

- (가) 조명시설, 안내시설 등의 가로시설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적재적소에 설치하되, 이용형태와의 상충을 피하고 보행자의 통행과 시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.
- (나) 휴게시설, 편익시설 등의 가로시설물은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장소를 선택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.
- (다) 교차로, 횡단보도 등 도로의 구조가 변하는 곳에는 교통안전시설, 신호등, 안내시설 및 조명시설을 집중 설치하도록 한다.
- (라) 가로광장 및 가로공원의 진입부, 도로모퉁이의 여유공간, 버스정차대 등의 위치에는 조명등, 단주, 수목, 벤치 등을 하나의 군이 되도록 배치하여 특별한 공간이 형성되도록 한다.
- (마) 안내판과 가로등의 통합지주, 단주와 벤치 겸용시설 등과 같이 가능한 한 가로시설물은 복수의 기능을 갖도록 통합설계하여 그 수량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.
- (바) 안내시설·조명시설·**피걸러**·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우체통·휴지통·공중전화 등의 편익시설 및 수목 등은 집단화시켜 배치하고, 이러한 시설물들은 통합된 계획에 따라 일관성있는 형태로 설계한다.
- (사) 수목보호홀 덮개, 상하수도, 전기통신맨홀 등을 포함한 세부시설은 가능한 한 조형성을 갖춘 자체 시·군의 독자적 형상의 제품을 개발하여 미관 및 지역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.

(2) 재료의 선정기준

- (가) 내구성, 유지관리의 용이성, 경제성 등이 있는 재료일 것
- (나) 합성재료 보다는 가능한 한 나무, 대나무 등과 같은 자연재료를 활용할 것
- (다) 특수한 지역여건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할 것(해안지역에는 수분, 염분, 바람 등에 강한 재료)